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	21	1996. 10. 17	총재 이 경 식

의안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불입과
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5조

제의취지 정부가 저축증대 및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
감면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계장기저축제
도를 도입함에 따라 은행이 동 저축을 취급함에 있어
현행 장기적금과 같이 이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
도록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범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최고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14조의 2,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(안)

현행	개정 (안)	비고														
제1조 ~ 제5조 (생략) (신 설)	제1조 ~ 제5조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규정은 가계장기저축의 도입을 위해 개정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.	- 시행일자 명시														
<별표>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이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12.</td><td>(생략) (신설)</td></tr> <tr> <td>13. ~ 16.</td><td>(생략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이 율	1. ~ 12.	(생략) (신설)	13. ~ 16.	(생략)	<별표>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이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12.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13. 가계장기저축 (만기 3년이상 5년이하)</td><td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</td></tr> <tr> <td>14. ~ 17.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이 율	1. ~ 12.	(현행과 같음)	13. 가계장기저축 (만기 3년이상 5년이하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14. ~ 17.	(현행과 같음)	- 호 재하
구 분	이 율															
1. ~ 12.	(생략) (신설)															
13. ~ 16.	(생략)															
구 분	이 율															
1. ~ 12.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
13. 가계장기저축 (만기 3년이상 5년이하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													
14. ~ 17.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